

“아내도 가족생계 부양자”

96. 11.15

세금·임금체계 달라졌다

올 연말정산부터 자녀양육비 공제...기혼여성에 가족수당

맞벌이가 세상을 바꾼다 ⑤

올 연말정산 때는 맞벌이 부부들이 꼭 챙겨야 할 일이 새로 생겼다.

만 여섯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 주부에게 자녀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자녀양육비공제' 항목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중·고생 학비보다 훨씬 비싼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면서도 전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개정 소득세법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항목을 신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1명씩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 50만~1백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남편은 생계부양자, 아내는 가계보조자'라는 틀 아래 짜여졌던 각종 제도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감안한 세금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직장내 임금체계에서도 엿보인다. 가족수당이 대표적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기혼여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위는 그동안 대다수 직장이 세워놓은 가족수당 지급지침이었다. 하지만 애초 남성만이 가계부양자라는 전제에 근거했던 이들 가족수당 지침은 최근 1~2년 사이에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전국 2백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민주노조 단체협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80%가 기혼 여성노동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은 "가족수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이라기 보다 임금보조의 성격을 갖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남녀 기혼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 추세"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 3항에서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용자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최근 조흥은행은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용사택'의 수혜범위에 기혼 여성을 포함시켰으며, 한미은행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서 남녀직원의 차별을 없앴다. 남성만이 생계부양자라는 틀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처리하기 힘든 집안 관리를 위한 제도가 갖춰져 나가는 것도 이런 변화중 하나다.

최근 전국 각 구청과 동사무소들이 '13시간 민원처리제'를 도입해 퇴근 후인 저녁 8~9시에도 민원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전업체나 도시가스점, 방역업체들도 대부분 24시간 운영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변화를 기다리는 부분은 여전히 많다. 의료보험료를 부부가 이중으로 부담한다든지, 6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세금공제액이 실제 보육료에 비해 턱없이 낮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통계청이 '95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95년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31.5%였다. <끝> 김미경기자



올 연말 정산 때부터 6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양육비공제 혜택을 주는 등 '맞벌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차츰 바뀌고 있다. 윤운식 기자